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19. . . (제 회)	

고령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고령군수 (총무과장)
제출 연월일	2019. . .

**법무규제개혁담당 심사필**

# 고령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일자 : 2019. . .

제 출 자 : 고 령 군 수

## 1. 개정의 필요성

주민의 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기 위해 읍·면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한 미비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제7조 조항 신설)
  - 수강료 징수액 중 일정금액을 봉사활동비로 지급 (제7조제3항 신설)
  - 자치센터 운영 위탁시 사업비 지원 근거 명시 (제7조제4항 신설)
  - 수강료의 수입 총액을 감안한 적정수준의 예산 지원 (제7조제5항 신설)
- 자치센터의 수강료 요율 등 결정, 징수 및 감면 (제10조 조항 신설)
  - 사용료는 읍·면장이, 수강료는 위원회에서 징수 (제10조제2항)
  -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결정 사항 (제10조제3항 신설)
  - 저소득자 등에 대한 사용료 등의 감면 사항 (제10조제5항 신설)
  - 수강료 등의 수입과 지출내역 공개 사항 (제10조제6항 신설)
  - 사용료 등의 징수·관리를 위한 회계책임자 지정 및 수강료의 징수·관리·지출은 위원회 명의로 함 (제10조제7항 신설)
- 위원회의 회계 및 사업감사를 위한 1명 이상 감사 선임 (제19조의2 신설)
- 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사업예산 지원 범위 명시 (제23조의2 신설)
  - 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및 작품 전시회
  - 우수자치센터 견학 및 전국 자치센터 박람회 참가
  - 자치위원 교육 및 워크숍 등

## 3. 개정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고령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나. 예산관련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다. 입법예고 기간 및 결과 : 2019. 8. 14. ~ 2019. 9. 3.

라. 성별 영향평가 결과 : 해당사항 없음

마. 규제영향 분석 결과 : 해당사항 없음

## 고령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령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조제1호, 제4조제1항 본문 중 단서 및 제2항, 제5조제2항, 제6조제3항, 제15조, 제17조제2항 중 “읍면사무소”를 각각 “읍·면”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제7조제1항 및 제3항, 제8조제1항, 제11조제4항, 제12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4조제1항, 제17조제2항 내지 제17조제3항, 제19조제2항,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 및 제24조 중 “읍면장”을 각각 “읍·면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6조제1항 중 “읍면사무소”를 “읍·면사무소”로 한다.

제3조제3호 중 “읍면 사무소별”을 “읍·면별”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시민교육기능”을 “주민교육기능”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지역문제 토론, 마을환경 가꾸기, 자율방재활동 등 주민자치기능
6. 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공부방 등 지역복지기능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읍면사무소”를 “읍·면사무소”로 한다.

- ② 시설 등의 종류, 내용, 그 변경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

장이 정한다. 다만 군수가 읍·면의 특성과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읍·면장은 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소속공무원,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 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사람 중 소속공무원을 제외한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감안하여 제10조에 따른 수강료 징수액 중 일정금액을 봉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자치센터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운영비 등 필요한 예산을 제10조에 의하여 징수 가능한 수강료의 수입총액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⑥ 군수는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수립, 연구·개발, 협조·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10명 이내로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에게 사

용료, 수강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 중 사용료는 자치센터의 시설·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읍·면장이 징수하며,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위원회에서 징수한다.

③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의 결정은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기준과 범위에서, 사용료의 경우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읍·면장이 정하며, 수강료의 경우는 읍·면장과 협의하여 위원회가 정한다.

⑤ 군수는 제11조제3항에 의한 이용자가 저소득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에 의한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과 감면 비율 등은 별도로 정한다.

⑥ 제2항에 의하여 위원회가 징수한 수강료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읍·면장과 협의하여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수입과 지출내역을 반기별로 반기경과 후 20일 이내에 공고·게시 등의 방법에 의해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⑦ 읍·면장은 사용료의 징수·관리 등을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수강료의 징수·관리·지출 등을 위하여 위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되, 수강료의 징수·관리·지출 등은 위원회 명의로 한다.

제11조제4항 중 “변상”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상”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읍·면장은 자치센터의 시설·장비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를 대비하여 시설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14조제1항 중 “1월전”을 “3개월 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읍면장은”을 “읍·면장은 제10조에 의한 사용료 등”으로, “군수”를 “연도폐쇄 후 30일 이내에 군수”로 한다.

제17조제3항 중 “특히”를 “이 경우 어느 한 계층에 소속된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되며 특히”로, “장려”를 “장려하여 전체위원의 3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노력”으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읍·면장은 위원 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매년도 개시 1개월 이내에 공고·게시 등의 방법에 의해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새로이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의해 즉시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8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은 매월 소정의 시간을 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월별 각 위원의 근무일자, 근무시간, 자원봉사내용 등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④ 위원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자치센터의 운영 등과 관련한 각종 교육·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19조제2항 중 “소속 공무원”을 “소속공무원”으로 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감사)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회계와 사업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1명 이상 둔다.

② 감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거나,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관계 전문가를 감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③ 감사는 위원회의 회계와 사업 집행을 감사하고,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위원회와 읍·면장에게 제출한다.

제20조제1항의 본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읍면 사무소”를 “읍·면”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를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로 한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촉하여야 한다.

제21조제2항 중 “재적의원”을 “재적위원”으로, “출석의원”을 “출석위원”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다른 위원회의 회의개최 통지는 위원장 명의로 한다.

④ 읍·면장은 자치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지원) 군수는 자치센터 활성화와 위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및 작품 전시회
2. 우수 자치센터 견학 및 전국자치센터 박람회 참가
3. 전국 및 도 단위 동아리 경연대회 참가
4. 자치위원 교육 및 워크숍
5. 자치센터의 발전 및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자 또는 단체에 대한 표창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8조에 의한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u>읍면사무소</u>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 ----- <u>읍·면</u>----- ----- ----- -----.</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주민자치센터”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u>읍면사무소</u>에 설치된 각종 문화 복지 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p> <p>2. (생략)</p>	<p>제2조(정의) ----- -----.</p> <p>1. ----- ----- ----- <u>읍·면</u>----- -----.</p> <p>2. (현행과 같음)</p>
<p>제3조(원칙) 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라 한다)와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p> <p>1. 2. (생략)</p>	<p>제3조(원칙) ----- ----- ----- -----.</p> <p>1. 2. (현행과 같음)</p>

3. 읍면 사무소별 자율적 운영 유도

4. 5. (생략)

제4조(설치 등) ① 자치센터는 읍면사무소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읍면사무소의 관할 구역 내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자치센터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치센터의 명칭은 해당 읍면사무소의 읍면장 및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군수가 정한다.

제5조(기능) ① 자치센터는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익기능 및 주민자치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을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 교실 등 시민교육기능

3. 4. (생략)

5. 지역문제에 대한 토론, 건의 등 주민자치기능

3. 읍·면별 -----  
--

4. 5. (현행과 같음)

제4조(설치 등) ① ----- 읍·  
면사무소에 -----  
-----.  
----- 읍·면-----  
-----  
-----.

② ----- 읍·  
면--읍·면장-----  
-----  
-----.

제5조(기능) ① -----  
-----  
-----  
-----  
-----.

1. (현행과 같음)

2. -----  
----- 주민교육기능

3. 4. (현행과 같음)

5. 지역문제 토론, 마을환경 가꾸기, 자율방재활동 등 주민자치기능

<신 설>

② 제1항의 기능 중 해당 읍면 사무소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6조(시설 및 프로그램) ① 군수는 자치센터가 제5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읍면사무소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시설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장이 요구한 시설 등을 우선으로 하되, 읍면사무소 별 특성,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조정할 수 있다.

③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정함에 있어서 사전에 해당 읍면사무소의 관할구역 또는 인근지역의 유사 시설 등의 운영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읍면사무소가 협소하거나, 임차한 건물, 기타 재정형

6. 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 공부방 등 지역복지기능

② ----- 읍·면 -----  
-----  
-----  
-----.

제6조(시설 및 프로그램) ① -----  
-----  
-----  
----- 읍·면사무소 -----  
-----  
-----.

② 시설 등의 종류, 내용, 그 변경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장이 정한다. 다만 군수가 읍·면의 특성과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조정할 수 있다.

③ -----  
----- 읍·면 -----  
-----  
-----  
-----  
-----.

④ ----- 읍·면사무소 -----  
-----

편상 시설 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설 등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 ① 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이하 “자치센터의 운영”이라 한다)은 읍면장이 한다.

② 읍면장은 소속공무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자치센터의 운영을 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③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읍면장과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

<신 설>

-----  
-----  
-----  
-----.

제7조(운영) ① -----  
-----  
----- 읍·면장이 한다.

② 읍·면장은 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소속공무원,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 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사람 중 소속공무원을 제외한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감안하여 제10조에 따른 수강료 징수액 중 일정금액을 봉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④ -----  
----- 읍·면장 -----  
-----

⑤ 군수는 자치센터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운영비

<신 설>

제8조(자원봉사자) ① 군수와 읍·면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제10조(사용료 등) ① 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읍면장은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회비 등(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에 관한 사항은 읍면장과 위원회의 자율결정에 따른다.

<신 설>

등 필요한 예산을 제10조에 의하여 징수 가능한 수강료의 수입총액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⑥ 군수는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수립, 연구·개발, 협조·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10명 이내로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8조(자원봉사자) ①----- 읍·면장-----

제10조(사용료 등) ① 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에게 사용료, 수강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 중 사용료는 자치센터의 시설·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읍·면장이 징수하며,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위원회에서 징수한다.

③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

③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율 등의 결정은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기준과 범위에서, 사용료의 경우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읍·면장이 정하며, 수강료의 경우는 읍·면장과 협의하여 위원회가 정한다.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⑤ 군수는 제11조제3항에 의한 이용자가 저소득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에 의한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과 감면 비율 등은 별도로 정한다.

⑥ 제2항에 의하여 위원회가 징수한 수강료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읍·면장과 협의하여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수입과 지출 내역을 반기별로 반기경과 후 20일 이내에 공고·게시 등의 방법에 의해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⑦ 읍·면장은 사용료의 징수·관리 등을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수강료의 징

수·관리·지출 등을 위하여 위  
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  
되, 수강료의 징수·관리·지출  
등은 위원회 명의로 한다.

제11조(이용 등) ① ~ ③ (생략)

④ 읍면장은 주민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  
복을 위해 변상 또는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 설>

제12조(주민참여) ① 군수와 읍면  
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주민 참여 방안을

② 관할구역내의 주민이나 단체  
는 군수 또는 읍면장에게 자치  
센터의 운영에 대한

③ 참여의 요구나 의견제출이  
있는 경우 군수 또는 읍면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제11조(이용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읍·면장-----  
-----  
----- 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변상 -----  
-----.

⑤ 읍·면장은 자치센터의 시  
설·장비의 노후 및 하자 등으  
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를  
대비하여 시설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12조(주민참여) ① ----- 읍·면  
장-----  
-----

② -----  
----- 읍·면장-----  
-----

③ -----  
----- 읍·면장-----  
-----



제14조(보고) ① 읍면장은 매년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자치센터의 연간 운영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읍면장은 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보고서를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설치) 읍면사무소의 자치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읍면사무소에 주민자치위원회를 둔다.

제17조(구성 등) ① (생략)

② 읍면장은 해당 읍면사무소의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덕망이 있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한다.

③ 읍면장은 주민 각계각층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관계등에서 균형있게 위촉하여야 하며, 특히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

제14조(보고) ① 읍·면장은-----  
----- 3개월 전-----  
-----  
-----  
-----.

② 읍·면장은 제10조에 의한 사용료 등 -----  
-----  
----- 연도폐쇄  
후 30일 이내에 군수-----  
-----.

제15조(설치) 읍·면의 -----  
-----  
----- 읍·면에 -----  
-----.

제17조(구성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읍·면장----- 읍·면-----  
-----  
-----  
-----.

③ 읍·면장-----  
-----  
-----  
-----, 이 경우 어느 한 계층에 소

극 장려하여야 한다. <단서 신 설>

④·⑤ (생 략)  
<신 설>

제1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②  
(생 략)  
<신 설>

속된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되며 특히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 전체위원의 3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⑤ (현행과 같음)

⑥ 읍·면장은 위원 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매년도 개시 1개월 이내에 공고·게시 등의 방법에 의해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새로이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의해 즉시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매월 소정의 시간을 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월별 각 위원의 근무일자, 근무시간, 자원봉사내용 등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신 설>

제19조(간사) ① (생 략)

② 읍면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사무처리 등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제20조(해촉) ① 읍면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단

④ 위원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자치센터의 운영 등과 관련한 각종 교육·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19조(간사) ① (현행과 같음)

② 읍·면장----- 소속공무원-----  
-----  
--.

제19조의2(감사) ① 위원회는 위

원회의 회계와 사업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1명 이상 둔다.

② 감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거나,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관계 전문가를 감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③ 감사는 위원회의 회계와 사업 집행을 감사하고,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위원회와 읍·면장에게 제출한다.

제20조(해촉) ① 읍·면장-----

-----  
-----  
----- 다

<신 설>

1. 해당 읍면 사무소의 관할구역 외에 거주하게 되거나 사업장을 떠나게 된 경우

2. ~ 4. (생략)

② 제1항에 의한 해촉 후 그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

제2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월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 설>

<신 설>

만, 제4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촉하여야 한다.

1. --- 읍·면-----  
-----  
-----

2. ~ 4. (현행과 같음)

② -----  
-----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1조(회의) ① -----  
-----  
----- 읍·면장이  
-----  
-----.

② ----- 재적의원 -  
----- 출  
석의원 -----  
-----.

③ 제1항에 다른 위원회의 회의 개최 통지는 위원장 명의로 한다.

④ 읍·면장은 자치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신 설>

제24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되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3조의2(지원) 군수는 자치센터 활성화와 위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및 작품 전시회
2. 우수 자치센터 견학 및 전국 자치센터 박람회 참가
3. 전국 및 도 단위 동아리 경연대회 참가
4. 자치위원 교육 및 워크숍
5. 자치센터의 발전 및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자 또는 단체에 대한 표창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4조(시행규칙 등) -----  
 -----  
 -----  
 -----  
 읍·면장-----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고령군 총무과	
연 락 처	(054) 950-6073